

대구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24583(본소), 2022나24644(반소), 2022나24620(반소)
판결 [정비사업비 등 반환 청구 ·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24583(본소), 2022나24644(반소), 2022나24620(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21 선고 2019가합1150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기현, 박주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1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6, 19, 20, 22, 23, 25, 26, 28 내지 35, 37 내지 41, 43 내지 47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박경수

별지1 순번 50, 52, 53, 54, 62, 67, 69, 70 기재 피고(반소원고)들 및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정진규

변론 종결2023. 1. 12.

판결 선고2023. 2. 16.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21. 선고 2019가합11505(본소),

2021가합11843(반소), 2022가합1013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3 '청구취지'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1) 별지4 기재 피고들 : 원고는 별지4 기재 피고들에게 별지4 '청구취지'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4 '공탁일자'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별지5 기재 피고들 : 원고는 별지5 기재 피고들에게 별지5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 25.자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제1심판결 중 별지5 기재 피고들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5 기재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별지3 순번 48 내지 58, 60 내지 70 기재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일부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별지3 순번 1 내지 47, 59 기재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별지5 기재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인용하고, 별지4 기재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지4 기재 피고들의 반소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별지3 순번 48 내지 70 기재 피고들은'을 '별지3 순번 48 내지 58, 60 내지 70 기재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의 '형태고'를 '형태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1행의 '청구할 수는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청구할 수는 없다[원고가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와 부담시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 내역 통지와 총회의 결의가 있었으며, 원고의 총회에서 예산에 관한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와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현금청산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협의하되, 연체료, 기간, 이자,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기투입한 사업비의 원리금 및 연체료 등을 가감한 금액을 반영하여 청산한다'라고 규정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비사업비를 구체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리처분계획 조항에서 '금액을 협의한다'라거나 '기투입한 사업비의 원리금 및 연체료 등을 가감한 금액을 반영하여 청산한다'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관리처분계획 조항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재건축조합으로서 민법상 조합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의 손익분배의 비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711조 제1항과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71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이 탈퇴할 때까지 사용된 정비사업비를 출자비율에 따라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8조 제1항, 제49조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별지3 순번 48 내지 58, 60 내지 70 기재 피고들에 대한 위 인정 범위 내의 본소 청구와 별지5 기재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별지3 순번 1 내지 47, 59 기재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별지3 순번 48 내지 58, 60 내지 70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병수

판사왕해진

판사송민화

별지